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변경〉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21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변경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로 변경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② (생략)	제5조의2(사무소) ① ----- ----- <u>부산광역시</u> -----. ② (현행과 같음)

- 부산광역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함께 금융중심지¹⁾로 지정되었으며, 부산 문현금융단지를 동북아의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전하였음.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평가가 있음.²⁾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고 부산광역시에 조성된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 p.2.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 변경과 관련하여, 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기관별·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② 논의과정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의 취지³⁾,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 필요성⁴⁾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함께, 금융회사 상시감시 및 부실책임조사 등을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유관기관 간 소통의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

3) 부산은 ‘해양금융, 파생상품 특화’를 지향하는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상시 감시,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실책임조사 등을 수행함.

4)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본점이 서울인 금융회사 등과의 상시 소통 필요(부보금융회사 286개 중 239개(84%)가 서울에 소재)